

위생용품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(제21조제1항 관련)

1. 수거대상 및 수거량

- 가. 1회용 기저귀: 1kg
- 나. 구강관리용품: 45개
- 다. 문신용 염료: 114g
- 라. 그 외 위생용품: 300g(ml)

2. 수거방법

- 가. 수거량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 검사에 필요한 양의 범위에서 수거하여야 한다. 다만, 검체의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소분·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.
- 나.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.
- 다.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.
- 라.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위생용품 시험·검사기관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.
- 마. 수거대상 위생용품이 수거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수거할 수 있다.